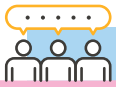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무역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합니다.

※ 법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및 제재조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	- 해외에서 국내로의 공급, 수입, 판매 행위 - 수출목적 제조, 수출 행위	▶	시정조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 수입, 수출 행위		- 수입 · 수출 · 판매 · 제조회사의 중지 - 당해 물품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 정정광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품질 등 허위 · 과장표시 물품	- 수입, 수출 행위	▶	과징금
기타	-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신청자격 및 요건

- 불공정무역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조사신청서(www.ktc.go.kr)를 작성하여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무역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지재권 침해로 과징금 부과 판정 시,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로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무역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합니다.

※ 법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및 제재조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산권 침해물품	- 해외에서 국내로의 공급, 수입, 판매 행위 - 수출목적 제조, 수출 행위	▶	시정조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 수입, 수출 행위		- 수입·수출·판매·제조행위의 중지 - 당해 물품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 정정광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품질 등 허위·과장표시 물품	- 수입, 수출 행위	▶	과징금
기타	-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신청자격 및 요건

- 불공정무역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조사신청서(www.ktc.go.kr)를 작성하여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무역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지재산권 침해로 과징금 부과 판정 시,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로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피해상담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상담, 효율적 감시·적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로부터 신고센터로 지정을 받아 산업 분야별 19개
민간(공공)단체 활동 중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신고문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02)3445-3763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8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70)7725-8730
한국무역협회	(02)6000-5447	한국철강협회	(02)559-3558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02)422-6690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02)517-645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38	한국완구협회	(031)348-8674
대한안경사협회	(02)756-1001	대한화장품협회	(070)8709-8614
한국산업용재협회	(02)2275-4071	한국저작권보호원	(02)3153-274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02)784-411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076
한국판유리창호협회	(02)3453-7991	한국패션산업협회	(02)460-8381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505		



대리인 비용 지원제도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5,000만원 한도)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실 (02-2124-3161)